

보도시점

2025. 10. 16.(목)
브리핑 시작 (11:00) 이후

배포

2025. 10. 15.(수)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
-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목) 확정, 발표하였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 장기 등 적출 이식 및 뇌사판정, 종합계획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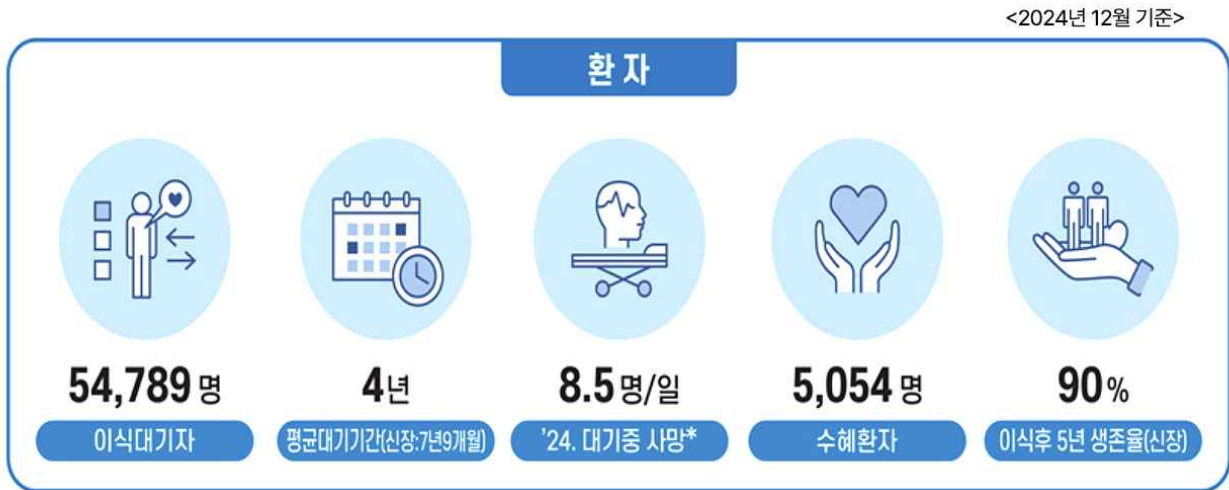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송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 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되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뇌사기증자) ('22) 405명 → ('23) 483명 → ('24) 397명



* 대기중 사망자는 행정안전부(연1회 반영) 사망 자료이며, 장기이식대기자 중 당해연도 사망자 자료 (예: 병사, 자연사, 타살, 사고사, 재해사, 사인불명 등 포함)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 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범제화하여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 살아있을 때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등록하는 기관으로, 기증희망 등록과 별개로 사망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 가능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①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②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③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④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⑤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인식개선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 백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24년) : (한국) 7.75, (대만) 5.77, (일본) 1.13 (스페인) 53.93
(출처: <https://www.irodat.org/>, 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25.9.16. 기준))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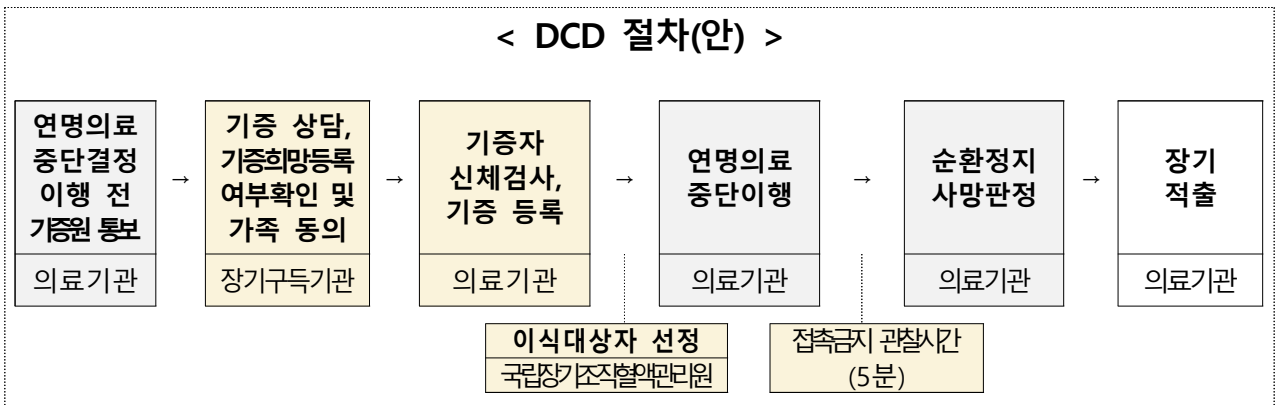
*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확대 예정

②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환자의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 절차(안)은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내용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④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예: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⑤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co.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나다순)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1.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2.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3. 장기등 기증·이식 주요 통계
4. 장기 등의 개념 및 특징
5. 기증·이식 관련 기관 및 역할
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관 개요
7.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개요
8.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개요
9. 뇌사자 장기기증·이식 과정
10.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요
11. 헌혈 주요 통계

<별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2026~2030)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선 (044-202-2630)
		담당자	사무관	강명진 (044-202-2631)
담당 부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지 (02-2628-3610)
		담당자	사무관	전미정 (02-2628-3691)
담당 부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은희 (02-2628-3630)
		담당자	사무관	안영미 (02-2628-3631)
담당 부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관리본부	책임자	본부장	강현진 (02-6953-6109)
		담당자	부장	오재숙 (02-6953-6361)
담당 부서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관리본부	책임자	본부장	임동하 (031-606-2906)
		담당자	부장	연완희 (031-708-2730)



비전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

**사업
목표**

**기증자 사회적 예우를 바탕으로
기증확대와 효과적 이식관리 시스템 구축**

	'23년	'24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장기기증희망등록율(%)	3.7	3.6	4.0	4.5	5.0	5.5	6.0
백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명)	9.3	7.8	9.0	9.5	10.0	10.5	11.0
백만명당 조직기증자(명)	3.3	2.8	3.0	3.2	3.4	3.6	3.8

**추
진
과
제**

**1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 ▶ 통합적 생명나눔 문화 조성
- ▶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 ▶ 기증희망등록 접근성 강화

**2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 ▶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뇌사기증 확대
- ▶ 살아있는 기증자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강화
- ▶ 안구(각막) 및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 관리체계 개선

**3 DCD 등 새로운
기증 방식 도입**

-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 ▶ 국제 수준의 기증·이식 지원체계 마련

**4 인체조직
공급 체계 정비**

- ▶ 장기기증자의 조직기증 연계율 제고
- ▶ 조직은행 운영과 지원체계 정비

**5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 ▶ 국가 통계 내실화
- ▶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붙임2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4.12월 기준)

여건



5,180 만명

총 인구



35.8 만명

'24. 사망자



2,986 명

'24. 뇌사추정 통보자



295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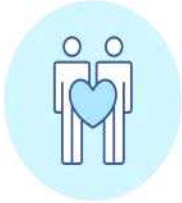
기증희망등록



462 개

기증희망 등록기관

기증



4,425 명

총 장기 조직 기증자수



397 명

뇌사 장기기증자



3,524 명

생존 장기기증자



3.79 개

뇌사1명당 기증장기



494 명

조직 기증자

환자



54,789 명

이식대기자



4년

평균대기기간(신장:7년9개월)



8.5명/일

'24. 대기중 사망*



5,054 명

수혜환자



90%

이식후 5년 생존율(신장)

* 대기중 사망자는 행정안전부(연1회 반영) 사망 자료이며, 장기이식대기자 중 당해연도 사망자 자료 (예: 병사, 자연사, 타살, 사고사, 재해사, 사인불명 등 포함)

구분	주요내용	수행기관
<p>I 단계</p> <p>기증 등록</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01 기증접수 Not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77-1458 통보접수 • 코디네이터 파견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div> <div style="width: 30%;"> <p>02 환자 상태 확인 및 가족 동의 Donor evaluation and family cons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적합성 평가 • 의무기록 열람, 주치의 면담 • 상담 시행 후 서면동의서 작성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뇌사장기기증 제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악화로 사망 • 뇌사가 아닌 경우 • 장기 상태가 기증에 부적합한경우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증은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되며, 전적으로 가족이 기증을 결정하는 시점부터 기증 과정이 시작됩니다. ※ 사고사의 경우 : 검사 전 적출승인 필요(장기기증)/검사지휘서 발급 필요(조직기증)</p> </div>	<p>기증자 ↕ 의료기관 ↓ 장기조직 기증원</p>
<p>II 단계</p> <p>장기 기증 (뇌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5%;"> <p>03 장기기증을 위한 의학적 처치 Medical management</p> </div> <div style="width: 25%;"> <p>04 뇌사조사 Brain death examin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에 걸친 뇌사조사 • 평탄뇌파 <p>※ KODA 협력기관으로 이송하여 진행할수있음</p> </div> <div style="width: 25%;"> <p>뇌사판정위원회 Brain death committ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의료진 포함 • 참석자 만장일치 뇌사판정 동의 • 뇌사판정시각 = 법정 사망시각 </div> <div style="width: 25%;"> <p>06 장기기증 수술 Organ recovery</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05 뇌사자 관리 및 수혜자 선정 Donor management and organ allo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 유전자, 기증적합성 검사 시행 • 장기별 수혜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div>	<p>관리원 ↕ 의료기관 ↕ 장기조직 기증원</p>
<p>III 단계</p> <p>조직 기증</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07 조직기증 적합성 평가 Evaluation for tissue don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력 조회 • 최종 의료관리자 판단 <p>※ 조직기증금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원인 및 사망시간 미상, 무연고자 및 해외국적자 • 감염성 질환(성병, 에이즈, B형/C형 간염 등) • 유해성 물질 노출 및 중독(약물, 중금속, 살충제, 고엽제) • 자기면역질환, 심장 호르몬 투여,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 활동성 박테리아, 결핵, 한센병, 밀라리아, 단순포진, 대상포진 •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크로이츠펠트 야콥 등) • 약성 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 우려 질환, 패혈증 </div> <div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이송</div> <div style="width: 45%;"> <p>08 조직채취 Tissue retriev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조직은행으로 이송 (서울, 광주, 양산) ※ 모바일 협약에 따라 이송하지 않을 수 있음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09 조직기증 수술 후 사후예우 Wound repair</p> </div>	<p>장기조직 기증원 ↓ 공공 조직은행</p>
<p>IV 단계</p> <p>사후 관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0 사후 예우 및 기증자 인도 To funeral ho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 인도 </div> <div style="width: 45%;"> <p>11 가족지원 Donor family support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가족지원 </div> </div>	<p>관리원 · 장기조직 기증원</p>

붙임4 기증·이식 관련 기관 및 역할('25.6월 기준)

(‘25.6월 기준)

구분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 구득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이식의료 기관
조직	1개 (국립장기조직혈액 관리원)	468개 (지자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	1개 (한국장기 조직기증원)	101개	36개 (상종급 대형병원, 약칭 HOPO)	110개
역할	이식자 선정 총괄 지도·감독	홍보·교육 기증희망등록	구득활동 뇌사관리지원	뇌사판정	구득활동 뇌사판정 뇌사관리 적출·이식	적출·이식

관 리 감 독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국가기관으로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기증 장기의 공정한 분배 (이식자 선정, 의학적 표준마련) 관련기관 지도 감독 (법 제10조)

문 화 조 성 · 희 망 등 록

❖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 제13조)

- 장기기증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기증문화 조성, 장기기증 희망신청 접수 등 수행

기 증 설 득



❖ 장기구득기관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 뇌사추정자 기증 설득, 뇌사판정대상자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수행 (법 제20조)

- 기증자 발생 시 코디네이터(구득전문간호사)가 출동하여 뇌사판정 및 유족동의 등 기증절차 지원을 위해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지정**

뇌 사 판 정



❖ 뇌사판정의료기관 : 장기 등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 (법 제18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Hospital-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

: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위해 뇌사판정, 적출, 이식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으로 36개 병원 지정 (법 제19조)

장 기 이 식

❖ 장기이식의료기관 :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 (법 제25조)

붙임5

장기등 기증·이식 주요 통계('24.12월 기준)

□ 장기기증·이식 관리 현황

(단위 : 명, 건)

연도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이식 형태			
		계	뇌사장기이식건수 (뇌사기증자)	생체장기이식건수	사망한자 안구이식건수 (사후기증자)
2024	54,789	5,054	1,506 (397)	3,524	24 (10)
2023	51,876	5,946	1,953 (483)	3,910	83 (38)
2022	49,765	5,531	1,642 (405)	3,841	48 (25)
2021	45,843	5,980	1,779 (442)	4,132	69 (42)
2020	43,182	5,937	1,889 (478)	3,994	54 (29)

- 장기등(16종): 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 골수·안구·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손·팔·말초혈(단,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은 소장과 함께 이식 가능)
- ※ 생체 장기이식 및 사후 안구 이식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보고가 늦어짐에 따라 차이가 발생
-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 ※ 2014년 통계부터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자료를 적용하여 대기 중 사망자 제외 - 삭제

□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현황

(단위: 건)

연도	뇌사	계	기증건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팔	안구
2024	397	1,506	644	342	12	194	185	0	0	0	129
2023	483	1,953	814	420	24	245	202	0	0	1	247
2022	405	1,642	677	342	31	167	136	0	1	1	287
2021	442	1,779	747	357	37	168	167	0	1	1	301
2020	478	1,889	848	395	32	173	150	0	1	0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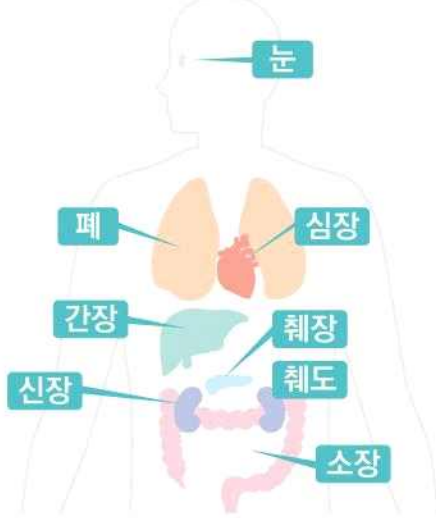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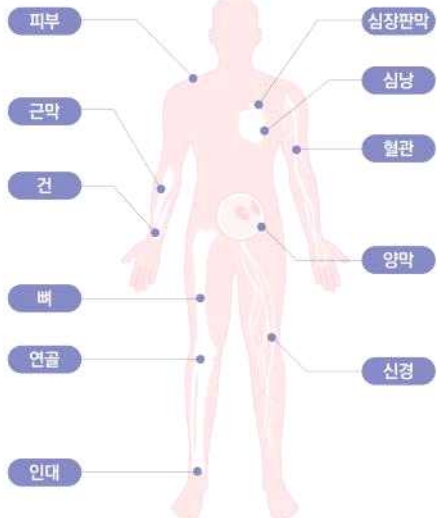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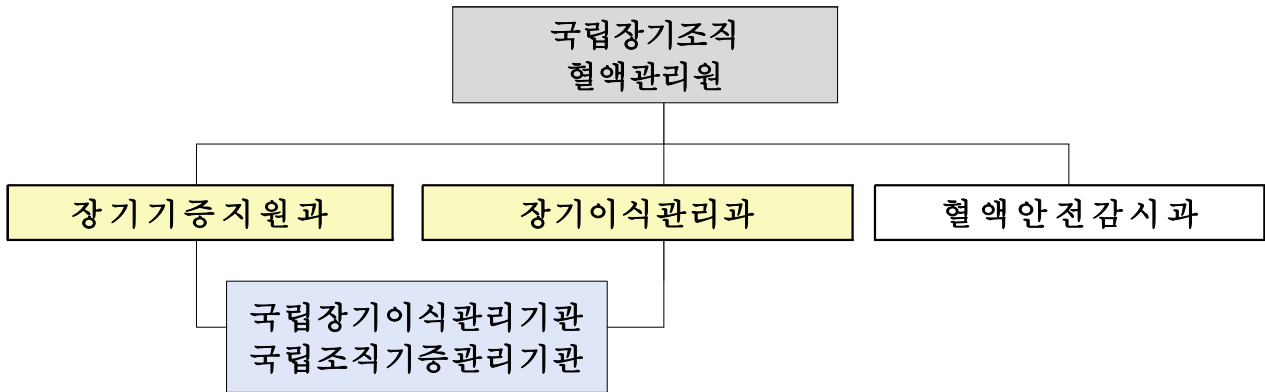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누계	고형장기								비고형장기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조혈모세포	각막(안구)	손팔
2024	54,789	45,567	35,707	6,532	1,615	1,210	453	25	25	6,994	2,212	16
2023	51,876	43,421	33,568	6,690	1,582	1,068	466	26	21	6,253	2,190	12
2022	49,765	41,706	31,773	6,609	1,733	1,034	505	30	22	5,919	2,128	12
2021	45,843	39,261	29,631	6,513	1,702	910	451	32	22	4,496	2,073	13
2020	43,182	35,852	27,062	6,125	1,510	774	323	36	22	5,030	2,300	0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장 기	인체조직
<p>장기 (16종) 인체조직 (11종)</p>		
<p>정 의</p>	<p>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적출하여 이식하는 사람의 내장 등</p> <p>* 장기법 제4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16종)</p>	<p>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사람의 건강 및 신체 회복 등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p> <p>* 인체조직법 제3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p>
<p>사업목표</p>	<p>LIFE SAVING 이식대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증 장기를 단시간 내 공정분배하는 것이 중요</p>	<p>LIFE ENHANCEMENT 신체의 완전성 및 기능회복을 위해 기증 조직을 안전한 이식재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p>
<p>대상자</p>	<p>뇌사자, 살아있는 자</p>	<p>사망자, 살아있는 자 * 살아있는 자는 수술 중 부산물인 뼈, 피부 등 기증 가능</p>
<p>적 출</p>	<p>사망 전 적출 *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적출</p>	<p>사망 후 채취 *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채취</p>
<p>이식대상</p>	<p>소수(정부에서 이식대상자 매칭·조정)</p>	<p>불특정 다수(이식대상자 조정 불필요)</p>
<p>보관기간</p>	<p>단기(즉시 혹은 1-2일)</p>	<p>장기(최장 5년)</p>
<p>공급방식</p>	<p>국내 뇌사자 기증</p>	<p>해외수입(약 98%, '21년), 국내 기증</p>
<p>소관 법률</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증 활성화 + 적출·이식)</p>	<p>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증 활성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p>

- (기능)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장기등의 이식, 인체조직, 제대혈 및 혈액에 관한 사항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
- (조직현황) 3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이자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임.

□ (주요 업무)

-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이식관리
 - 생명나눔 문화확산 및 인식 제고
 -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
 -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적정 관리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 정보센터 운영
- 적정수혈 및 안전한 혈액공급
 - 적정수혈 지원 및 환자혈액관리 활성화
 - 안전한 혈액의 공급 지원 및 수혈 관리체계 지원
 - 특정수혈부작용, 수혈자 역추적조사 등 실태조사

□ **기능 및 조직**

-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리의 공적 전담기구(‘17. 3월 지정)로서 잠재적 뇌사자 발굴, 기증 상담, 뇌사판정대상자 파악 및 의료기관의 장기 적출 절차 지원,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수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직기증지원기관

- 기증자 발굴, 뇌사자 관리를 위해 전국 3개 권역, 4개 지부, 5개 사무소 운영 중

* 관할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 발생시 코디네이터(간호사)가 신속 출동, 2~3일간 최적의 장기·조직기증을 위해 뇌사자 관리

< 활동지역 및 인력운영 >

- 전국관할 : 3개 권역 분할 운영
- 사무소 :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 검사실 의원 운영 (진단검사의학과의원) : 서울
- 전국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가능병원 : 323개

활동 행정구역		발생가능병원
중부권역 (2개 지부, 1개 사무소(공동사용))	서울 / 인천	178
	경기 / 강원	
	제주	
충청·호남권역 (1개지부, 2개사무소)	충청 / 대전 / 세종	70
	전북 / 전남 / 광주	
영남권역 (1개지부, 2개사무소)	대구 / 경북	75
	부산 / 울산 / 경남	
계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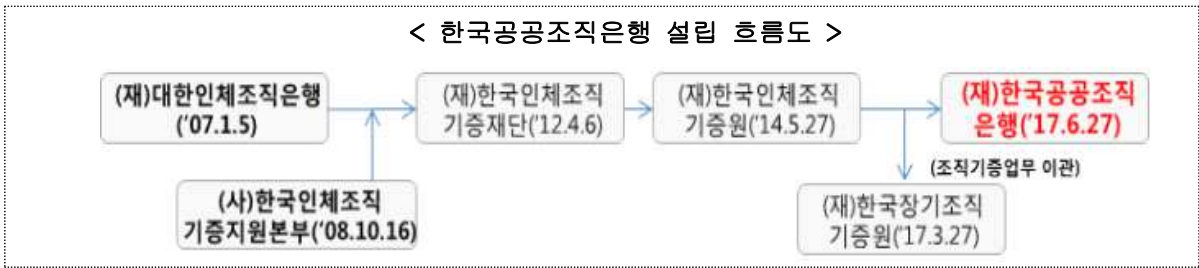
* 발생가능병원 관련부서 : 신경과, 신경외과, 중환자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장기이식센터 등

- 조직 : 2본부(19팀) 1의원 5부 4지부
- 인력 : 정원 128명('25)



□ **사업 배경 및 수행기관**

- (사업배경) 정부 차원의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 법안 제정* 및 국제기구의 혈액·장기·인체조직 등 인체유래물 자급자족 권고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04.1.20.)
 - **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이식학회의 이스탄불 선언<'08.4.30~5.2>
- (수행기관) 인체조직 적정 수급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한 대한인체조직은행 설립 이후, 통·폐합 과정을 거쳐 한국공공조직은행 설립·운영('17.6, 정원 65명('25))



□ **기관 역할 및 주요 성과**

- (기관 핵심 역할)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

- < 한국공공조직은행 핵심 역할 >
- ① 영리조직은행에서 수입 중단한 장골 등 필수 및 맞춤형 이식재 가공·공급
 - ② 인체조직 이식재의 외국 수입 의존도(약 93%)를 탈피한 자급자족률 제고
 - ③ 외국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비해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 강화
 - ④ 대형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 국가전략 물자로서의 안정적인 수급
 - 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구 분	성남 조직은행	서울성모 조직은행	양산부산대 조직은행	빛고을전남대 조직은행	충북대 조직은행
소재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서울 서초구 반포동505	경남 양산 물금읍 금오로20	광주 남구 덕남길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설립일 (허가일)	'18.9.3	'10.12.15	'13.12.2	'14.7.7	'25.7.15
기능	인체조직 가공분배 저장	인체조직 채취·저장	인체조직 채취·저장	인체조직 채취·저장	인체조직 채취·저장
시설	보유 형태	소유/임차(일부)	임차	임차	임차
	면적	139평/47평	35평	70평	33평
	주요 시설	조직가공처리실 생산관리본부	조직채취실		

□ **개 요**

- (구성) 의료계, 법조계, 윤리계 등 장기기증 관련 전문가 및 민간 단체,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
- (목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위원회 심의 사항(장기이식법 제8조) >

-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장기이식등록기관 등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24.8.1. ~ '26.7.31.(2년)

□ **명 단**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성별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성별
김영수	경상대학교 신경과 조교수	남	정욱재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남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특임교수	여	조광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남
김태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교수	여	조양현	성균관대학교 외과 교수	남
문재영	충남대학교 내과 교수	남	주동진	연세대학교 외과 교수	남
배현아 (부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	최병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과 기금조교수	남
손선영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회장	여	정통령 (당연직)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남
안형준 (위원장)	경희대학교 외과 교수	남	장호연 (당연직)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남
윤영인	울산대학교 외과 부교수	여	이삼열 (당연직)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남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여			

* 간사 : 혈액장기정책과장

붙임11 헌혈 주요 통계

한눈에 보는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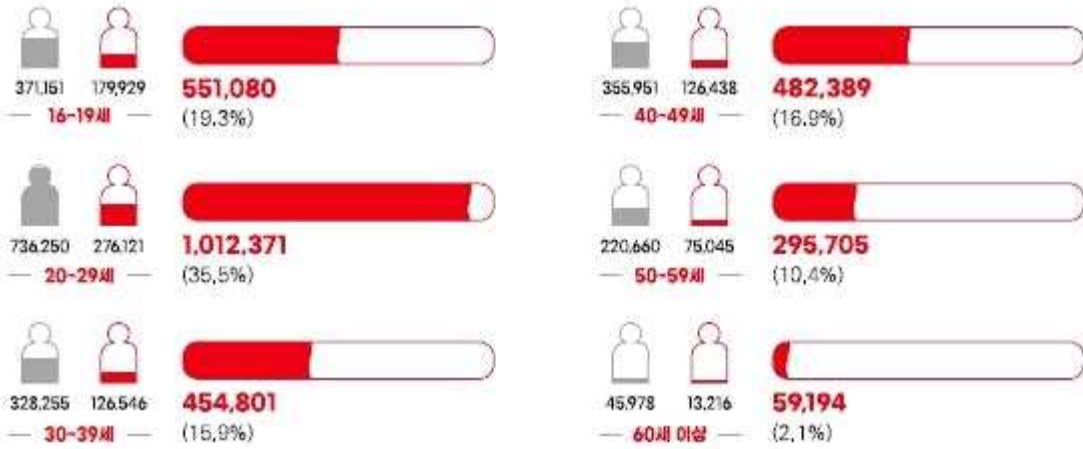
통계기간 2024.1.1. - 12. 31.

• 국민 헌혈률



• 연령별 헌혈현황 | 단위 : 건

● 남자 ● 여자



• 방법별 헌혈현황 | 단위 : 건

